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163

제출연월일: 2024. 7. 23.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안 제1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 말소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안 제2조)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한자와,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안 제3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증 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거 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종전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 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제4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제2조(「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2조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2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2의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3조(「공인중개사법」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49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제1호의6을 제1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호의5"를 "제1호의5"를 "제1호의5" 로 한다.

1의6.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 조제4호·제11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제3조(「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 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인중개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

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 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	<u><삭 제></u>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2. ~ 10. (생 략)	4의2. ~ 10. (현행과 같음)
1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	<u><삭 제></u>
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u>사용한 자</u>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17.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u>17.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u>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	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	
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18.・19. (생 략)	18.・19.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신 설>

7. · 8. (생략)

③ • ④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

나 사용한 자

7. · 8.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u><삭 제></u>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u>관리행위를 한 자</u>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	
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	
<u>한 자</u>	
제10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0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의2.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
	<u>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u>
2. ~ 22. (생 략)	2. ~ 2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2의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
	<u> 니한 자</u>
23. ~ 27. (생 략)	23. ~ 2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	제49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	<u><</u> 삭 제>
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삭 제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5. (생 략)	1. ~ 1의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6.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u>1의6</u> . (생 략)	<u>1의7</u> . (현행 제1호의6과 같음)
2. ~ 5. 삭 제	
5의2. ~ 9. (생 략)	5의2.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	⑤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	・징수	한디	7.		

- 1. 제2항제1호의2·제1호의3·
 <u>제1호의5</u>,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2. (생략)
- 3. 삭 제
- 4. 제2항제1호 · 제1호의4 · <u>제1</u> 호의6, 제3항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1
<u>제1호의5ㆍ제1호의6</u>
2. (현행과 같음)
4 <u>제1</u>
호의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41조제4호	정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1천만원 이하)조항 삭제
2	안 제41조제11호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함(제44조제2항제6호의2)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이 제 41 코 제 4 중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1 안 제41조제4호	- 별도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음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2 안 제41조제11호	- 별도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가 불가

2. 상세 사유

- 제41조(벌칙)제4호는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비명령 미이행시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위반사례 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 하여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 제41조(벌칙)제11호는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자에 대한 벌칙을 제외하는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근 3년('21년 ~'23년)간고발하 사례*가 없어 비용 추계 곤란
 - * 매년 상·하반기 지자체에서 일제점검 실시결과 매매용 건설기계 운행·사용 사례 없음

Ⅲ. 부대의견

○ '22.2.3.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비명령을 미이행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여야 하며, 등록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수입의 순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유찬석	최찬	전인재	김상문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찬	044-201-3544	sunhighchan@korea.kr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100조제1호· 제2호(벌칙)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① 자치관리 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나 ^②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100조제1호· 제2호(벌칙)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별도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가 불가

2. 상세 사유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자와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 감독업무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업무이므로 조직의 신설 등 별도의 재정소요는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위반사례에 대한 정량적 분석도 불가능하여 현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재정수입의 순감소액도 기술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위 과태료 전환 행정제재사항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재조항으로 위반사항이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빈번하게 발생 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Ⅳ. 작성자

O 성명

사무관	과장	국장
주재덕, 김민태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	주택정책관 김헌정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재덕	044-201-3374	deoks77@korea.kr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49조제1항제8호 (벌칙)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함(법 제49조제1항제8호)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49조제1항제8호 (벌칙)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별도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시 재정수입의 변동액에 관한 추계가 불가	

2. 상세 사유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 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인중개사 감독업무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업무이므로 조직의 신설 등 별도의 재정소요는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반사례에 대한 정량적 분석도 불가능하여 현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재정수입의 변동액도 기술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위 과태료 전환 행정제재사항은 부동산 중개 시장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재조항으로 위반사항이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빈번하게 발생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Ⅳ. 작성자

O 성명

사무관	과장	국장
김교준	부동산개발산업과장 박동주	토지정책관 남영우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교준	044-201-3412	kkj6921@molit.go.kr